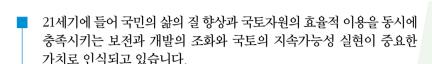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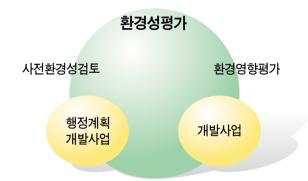
차례

- 02.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?
- 04.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과 시행
- 06. 달라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
- 12.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
- 14. 환경성평가 체계





- *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지수는 세계 146개국 중 122위(2005년 세계경제포럼발표)
-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함께 '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'의 추구라는 국토환경관리의 기본원칙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입니다.
 - 환경부는 국토개발 과정에서 벌어지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 (77)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(93)를 도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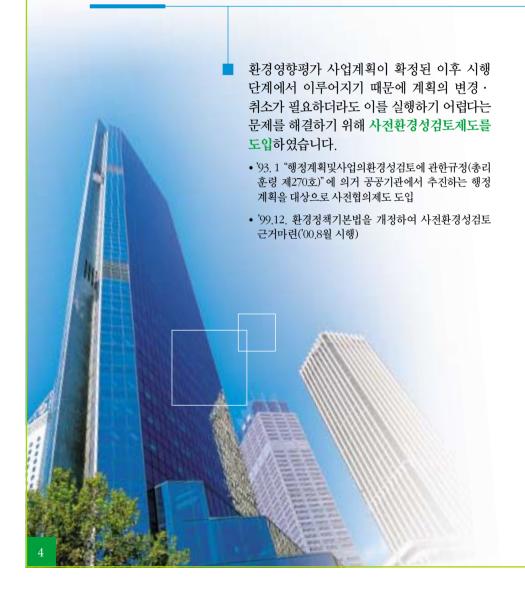
- **환경영항평가**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, **계획이 확정된** 후 사업실시 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반면.
-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보전용도지역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, 계획 확정 전 또는 인허가 전에,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 장래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 · 분석하여 환경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





• •

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과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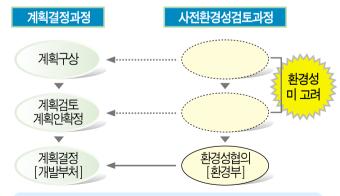


2000.8월 이후 현재까지 총 16,947건을 협의하였고, 이들 중 상수원 악영향, 자연환경훼손 및 생태계 단절,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등 입지 · 계획의 부적정을 사유로 835건(5%)에 대해서는 부동의 하였습니다

구분	계	'00	'01	'02	'03	'04	'05
협의건수	16,947	250	2,307	2,995	3,618	3,778	3,999

▶ 기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

- 90년대 후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환경적·사회적 이슈가 되자 사전 환경성검토제도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법제화('00.8)하고 검토대상을 민간부문의 개발사업까지 확대하였으나.
- 검토대상이 협소하고 사회적 합의형성과정이 미흡하였을 뿐만아니라, 개발 계획을 수립·확정한 후 시행단계에서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
 - * 21세기 들어 새만금사업, 천성산터널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환경과 보전의 강등으로 중단되는 사태 빈발



- 계획안 확정 이후 30일간 협의 ▶ 환경성검토 미흡
- 계획안 확정 이후 수정 ▶ 정책일관성 미흡, 개발부처 불만





달라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

▶ ■ 전략환경평가체제로 개편

- 보전과 개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기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개선, 전략환경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. (05.5.31, 환정정책기본법 개정, '06.5.30일 시행령 개정)
 -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수립시부터 대안설정과 분석을 통해 환경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하였습니다.

	_			
종전 사전환경성검토	→	전략환경평가 체계로 개선		
검토대상 38개 행정계획	•	83개 행정계획		
대안분석 없음		대안분석 의무화		
스코핑(scoping) 없음	•	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· 스코핑 의무화		
의견수렴 없음		의견수렴 실시		
	-	200		
환경영향평가와 구분 모호		환경영향평가와 구분 명확화		

* 전략환경평가(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): 개발사업에 앞서는 상위 단계의 행정계획부터 환경영향을 사회경제적 영향과 함께 고려하는 체계적 의사결정 지원수단

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의 확대

■ 기존 38개에 불과하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을 도로, 철도, 댐건설기본계획 등 그 간 환경갈등을 야기하였던 상위 행정 계획을 포함하여 83개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.

2 대안설정 및 분석의 의무화

■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시, 대안은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계획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(No Action)를 포함하여 2개이상을 검토하도록 하고, 대안의 종류는 행정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발수단, 규모, 수급, 입지, 시기와 순서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.





3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과 스코핑 실시

-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 작성단계에서부터 환경성검토협의회에서 검토항목과 범위, 대안의 종류를 결정하는 스코핑(scoping)을 실시토록 하였고,
- 환경성검토협의회는 계획수립기관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, 협의기관, 관계행정기관의 직원 등으로 10인 내로 구성하고 다른 법령의 위원회가 동일한 구성인 경우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4 의견수렴 의무화

- 앞으로는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이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주민·전문가·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.
- 의견수렴 방법으로 공람(20일 이상) 및 설명회는 의무적으로 하고, 공청회·토론회 등의 방법은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계획에 대한 관계법령에 의견수렴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.

사전환경성검토시 의견수렴을 한 경우 다음 요건 충족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의견수렴 생략 가능

- **환경영항평가 의견수렴 절차와 동일**하면서, **사전환경성검토협의**가 완료한 날부터 3년 미경과
-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사업규모가 **사전환경성검토협의 당시의 사업규모** 보다 100분의 30 이내로 변경된 경우
- 소각시설 · 폐기물매립시설 ·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역할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



■ 5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검토항목

■ 계획수립 기관은 종전 구비서류에 대안분석 및 의견수렴 결과를 추가하여 작성하고, 협의기관(환경부·지방환경관서)에 30부 (CD 등 전산기억매체 1장 별도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개정 검토서 작성내용

-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사업계획
- 토지이용현황
- 생태계보전지역 등 보전지역 분포
- 식생 등 생태적 특성, 개발현황,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
- 대안설정 및 환경성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
-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(행정계획에 한함)
- 위치도. 토지이용계획도
-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
- 30,000㎡ 미만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민감지역이 아닌 경우 사업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구비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였습니다.





-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후 행정계획이 확대되면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재협의 · 사전협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 - 협의시 제척·보전토록 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와 협의이후 사업규모가 30%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는 재협의
 - 10 내지 30% 미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사전협의
 - * 재협의는 협의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을 재검토, 변경내용에 대한 혐의는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약식절차

사전환경성검토 중복방지 규정 신설

- 다른 행정계획에서 "계획적정성"과 "입지타당성"을 검토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**중복검토를 면제**하도록 하였습니다.
- 구체적인 입지계획이 있는 행정계획(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제외한 별표 2) 중 동일한 법률에 규정된 동일한 목적의 행정계획이 2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의 행정계획에 대해서만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.
- 동일한 목적으로 일련의 행정계획을 연속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행정계획에서 통합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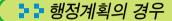
8 경과규정

- 환경정책 기본법령 시행 당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 또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법적 효력을 가진 행위(용역계약, 지구지정 제안 등)가 있으면 이미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,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
 - **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적용 예** : 신설된 의견수렴 절차는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부터 적용
 - **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대한 적용 예**: 새로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은 시행 후 최초로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계획, 허가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
 - 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용 예: 검토서 작성내용, 협의회 의견청취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부터 적용



•••

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



행정**계획안 입안** (관계 행정기관)

〈신설절차〉

검토서초안 작성 (관계 행정기관) ○ **환경성검토협의회** 의견청취

- 대안의 종류 · 세부검토항목의 종류 선정(스코핑)

주민 · 관계 전문가, 환경단체 등의 **의견수렴** (관계 행정기관) ○ 개별법령에 절차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실시 ○ 개별법령에 절차가 없는 경우 이 영에 따라 주민공람 · 설명회, 공청회 등을 실시

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검**토서 작성** (관계 행정기관)

협의 요청 (관계 행정기관 → 환경부) ○ 개별법령에 따라 ① 관계부처 협의시 또는 ② 위원회 심의전 또는 ③ 계획의 확정 전에 요청

협의결과 통보 (환경부 → 관계 행정기관)

○ **30일**내에 통보(필요시 10일 연장 가능)

협의의견 반영 조치결과 · 계획 통보

○ 관계행정기관 → 협의기관

계획변경시 재협의 등

○ 사업규모가 30%이상 변경시 재협의, 10-30% 변경시 변경내용에 대한 사전협의



사업계획 수립, 허가 · 인가 · 승인신청

: 관계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자

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

: 관계행정기관 작성 또는 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음

혐의요청

: 관계행정기관 → 환경부

사전환경성검토협의 (전문가 자문, 현지확인 등)

: 환경부

협의결과 통보

: 환경부 → 관계행정기관(30일~40일)

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

: 관계행정기관

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

: 관계행정기관 → 환경부

이행상황 확인

: 환경부 → 관계행정기관



환경성평가 체계

■ 전략환경평가 체계의 도입으로 개발관련 상위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개발사업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환경성평가체계가 구축됨

평가대상		평가 종 류		평가항목(예시)
입지가 없는 행정계획 (시행령 별표3)	•	사전환경성검토	>	○ 계획적정성 -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-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- 계획의 일관성
입지를 결정하는 행정계획 (시행령 별표3을 제외한 별표2)		사전환경성검토	•	 계획적정성 다른 계획에서 검토한 경우는 제외 입지타당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
소규모 개발사업 (19개 보전이 필요한 지역)	•	사전환경성검토	•	○ 입지타당성 - 행정계획 단계에서 검토된 경우는 제외 -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제외
대규모 개발사업 (74개 사업)	•	환경영향평가	•	○ 환경영향저감방안 -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설계방안 - 기후ㆍ기상ㆍ동식물 등 23개 항목



⇒ 가편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

구 분	개정 사전환경성검토	환경영향평가		
' -	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200001		
법적근거	환경정책기본법	환경 · 교통 ·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		
주요기능	개발 관련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적정성,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	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강구		
협의시기	행정계획의 수립 확정 전, 개발사업 인ㆍ허가 전	행정계획이 확정된 이후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전		
대상사업	· 개발 관련 행정계획(17개 분야 83종) · 보전용도지역내 소규모 개발사업(19종) (행정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사업)	대규모 개발사업(17개 분야 74종)		
협의 요청기관	행정계획 수립(또는 승인)기관, 개발사업 인ㆍ허가 기관	개발사업 인ㆍ허가 기관		
평가서류	사전환경성검토서	환경영향평가서		
의견수렴	주민공람 · 설명회, 공청회 등	공고, 공람, 설명회, 공청회 - 사전환경성검토시 실시한 경우 생략 가능		
협의기간	30일 이내(10일 연장)	45일 이내(15일 연장)		

